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의 약 과)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246
----------	-----

제출년월일 : 2024년 2월 일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4.2.28.)이 도래함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성북구자살예방센터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현)위탁법인	시설규모	위탁기간
성북구자살예방센터 (개소일:2012. 3.)	성북구 성북구 오패산로 21, 4층(월곡1동)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 연면적 : 38㎡ · 규모: 사무실, 상담실	[1기] 2012.03.01.-2015.2.28.
				[2기] 2015.03.01.-2018.2.28.
				[3기] 2018.03.01.-2021.2.28.
				[4기] 2021.03.01.-2024.2.28.

나. 위탁사무내용

○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

- 고위험군 의뢰체계 구축을 통한 발굴 확대
- 우울·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위험성 평가 및 서비스연계 확대
- 자살위험성 감소 및 우울·고독감 해소를 위한 예방상담과 집중사례관리
- 보건복지통합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사례회의 진행

○ 민·관 협력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자살예방사업

- 동별 자살예방지킴이 '마음돌보미' 조직을 통한 자살예방 생명안전망 구축
- 마음돌봄활동을 통한 자살고위험군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 확대
- 지역 위기대응능력 향상

○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직원대상 생명사랑 자살예방교육 진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사랑 축제 등 지역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운영

○ 생명안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생명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 보건복지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업무협력 간담회 실시
- 생명안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살예방업무에 대한 협업체계 마련

다. 위탁기간 :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마. 위탁사업의 범위 :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 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 센터의 설치)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2. 6. 10.>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⑥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